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814

발의연월일: 2023. 5. 4.

발 의 자:한기호·이양수·노용호

권성동 • 유상범 • 김희곤

이철규 · 이헌승 · 유의동

지성호 · 성일종 · 송기헌

엄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,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.

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,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,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.

특히,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,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·축·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.

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

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,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"자치권"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).

법률 제 호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(접경지역 농·축·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) ① 국가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.
 - ② 국방부장관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(단순처리품 포함)을 조달하는 경우수의계약(隨意契約)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운영·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·축·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25조(민간인통제선 조정 요청) ①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 간인통제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.
- 제26조(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·변경 및 해제를 각각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·군이 설립한 지방공 기업
 - 3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

라 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• 연구원

- ④ 국방부장관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27조(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) ① 국방부장관은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 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 치도 안의 토지(이하 "미활용 군용지"라 한다) 현황을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28조(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)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, 양여,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해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

- 2.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
- 3. 국방부장관이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의 제거 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 를 의뢰한 경우
- 4.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경우
- 5.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 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·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.
- 제29조(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공공사업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) 등을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「징발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

- 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「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0조의2제2항 및 「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·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·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.
- ③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또는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.
- ④ 관할 시장·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.
- 제30조(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.
 - 1.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 - 2. 시·군 또는 시·군이 설립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

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
- 3.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4. 피징발자,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·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	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
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	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
<u> <신 설></u>	제24조(접경지역 농・축・수산물
	군 급식 공급지원 등) ① 국가
	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
	제2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 접
	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
	물・축산물・수산물을 우선 구
	매할 수 있다.
	② 국방부장관은 「국가를 당
	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
	률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률에
	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
	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
	조제1호에 지정된 접경지역 군
	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
	는 농산물・축산물・수산물(단
	순처리품 포함)을 조달하는 경
	우 수의계약(隨意契約)을 할 수
	있다.
	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
	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「농
	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

<신 설>

법」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· 위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 구매하거나 수의계약 을 하는 경우 품질 좋은 농· 축·수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제25조(민간인통제선 조정 요청)
①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요 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한다.

제26조(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2조제6호

- 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・변경 및 해제를 각각 요청할 수있다.
-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가 요 청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5조제1 항의 국방부심의위원회에 도지 사가 추천하는 관련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의 임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장

 원자치도 및 시·군이 설립한

 지방공기업
- 3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 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

원 • 연구원

④ 국방부장관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 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7조(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) ① 국방부장관은 「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 배치로 인하여 군용지로 활용 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 의 토지(이하 "미활용 군용지" 라 한다) 현황을 도지사가 요 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미활용 군용 지 현황을 제공받은 도지사 또 는 관할 시장·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 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미활용 군 용지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
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28조(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등)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정발 해제, 양여,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해

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

 경우
- 2.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・군
 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
 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
 경우
- 3. 국방부장관이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 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 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한 경 우
- 4.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・군

수가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

- 5.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오염등을 제거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제거는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정화방법을 적용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 지에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 험물, 토양오염 등을 제거·개 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 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 으로 한다.

제29조(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)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·군수가 공공 사업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

<신 설>

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) 등을 위해 미활용 군 용지에 대하여 「징발법」 제1 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 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사업은 「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「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 역 내의 토지의 수용・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 용 ·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. ③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・군 수가 미활용 군용지를 매입하 려는 경우 또는 미활용 군용지 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 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군부 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 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

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.

④ 관할 시장·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.

제30조(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활용 군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 년 이상 10년 이하 장기분할상 환하게 할 수 있다.

- 1.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

 <u>가 설립한 「지방공기업법」</u>

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

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2. 시·군 또는 시·군이 설립 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
- 3. 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가

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 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도

- 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 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
- 4. 피징발자,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경우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 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・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